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체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감독 및 관제에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구치소·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23명(6급 2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에 필요한 인력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 사증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및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사증 및 외국인 체류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관리과장의 직급을 각각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개편하면서 센터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체류외국인 관리인력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 중 21명(6급 5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과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지정하며,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2명, 8급 29명, 9급 35명)을 각각 감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일부 교육훈련이 검찰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 2명)을 검찰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 ~ 1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1호 중 “영치금품”을 “보관금품”으로 한다.

별표 1의 서울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광주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전주소년원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춘천소년원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786”을 7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748”을 “7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38”을 “732”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933”을 “22,938”로 하고, 일반직 계 “22,914”를 “22,91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708”을 “22,713”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62명
2)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35명
3)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7명
4) 난민심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6명
5)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32명
6)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52명
7)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42명
8)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9명
9)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50명
10) 항만 국경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33명
11)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101명
12)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3명
13)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4명
14)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3명
15)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88명
16) 보호외국인의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1명
17)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2명
18)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법무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21명
19)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55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광주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란의 개정규정, 별표 2의 전주소년원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별표 4의 전주보호관찰소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 2명(5급 2명)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 법무연수원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2명, 8급 29명, 9급 3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4]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44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의정부보호관찰소	경기도 의정부시
인천보호관찰소	인천광역시
수원보호관찰소	경기도 수원시
춘천보호관찰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대전보호관찰소	대전광역시
청주보호관찰소	충청북도 청주시
대구보호관찰소	대구광역시
부산보호관찰소	부산광역시
울산보호관찰소	울산광역시
창원보호관찰소	경상남도 창원시
광주보호관찰소	광주광역시
전주보호관찰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제주보호관찰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서울특별시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대전광역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교정본부) ① · ② (생 략)	제12조(교정본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③ -----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수용자의 <u>영치금품</u> · 의복 · 음식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 영에 관한 사항	21. ----- <u>보관금품</u> ----- ----- -----
22. ~ 36. (생 략)	22. ~ 36.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6]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86</u>	<u>780</u>	-6
·	·	·	
·	·	·	
일반직 계	<u>748</u>	<u>742</u>	-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u>738</u>	<u>732</u>	-6
·	·	·	
·	·	·	

[별표 7]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2,933</u>	<u>22,938</u>	+5
일반직 계	<u>22,914</u>	<u>22,919</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2,708</u>	<u>22,713</u>	+5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2